

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 
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차인영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6. 2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52호로 2023년 5월 4일 차인영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「국가보훈기본법」 및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, 장례비지원 등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,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적용대상(안 제3조)
- 나. 책무 및 예우(안 제4조 ~ 제5조)
- 다.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(안 제6조)
- 라. 복지지원 등(안 제9조)
- 마. 보훈예우수당 지급(안 제10조)
- 바. 사망위로금 지급(안 제11조)
- 사. 예산지원(안 12조)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
### 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 5. 4. ~ 2023. 5. 8.)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및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, 장례비지원 등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,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### ○ 주요 개정내용으로

-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에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추가하였고,

- 안 제6조에서는 공훈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였으며,
-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.

## 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 대상자에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였고,
-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“유공자 본인”에서 조례안 “제3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개정함으로써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까지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, 공훈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고 자료

##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.

1. 재해사망군경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2. 재해부상군경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“상이등급”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3. 재해사망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4. 재해부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② ~ ③ 생략

**제10조(보훈급여금의 종류)**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(報償金), 수당 및 사망일시금(死亡一時金)으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활조정수당
2. 간호수당
3. 부양가족수당
4. 중상이(重傷痍)부가수당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

**제11조(보상금)**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해부상군경
  2.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  3.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- ② ~ ⑤ 생략